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23. . . (제 회)	

지방공무원보수규정
일부개정령안

제출자	국무위원 000 (행정안전부장관)
제출연월일	2023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「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」 시행('23. 6. 11.)에 따라 정무직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감사위원장의 연봉액을 규정하되, 정무직 및 4급 이상 공무원의 연봉 지급 특례('22년도 기준 연봉 지급)와 동일하게 2023년 12월 31일까지는 1억918만5천 원을 지급하려는 것임

3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00000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9999. 12. 00. ~ 12. 00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일부개정령안

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12 비고 1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비고 1. 정무직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하는 서울특별시의 정무부시장의 연봉은 1억3770만원, 제주특별자치도의 감사위원장과 행정시장 및 강원특별자치도의 감사위원장의 연봉은 1억1104만2천원, 세종특별자치시의 감사위원장의 연봉은 1억298만3천원으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강원특별자치도 감사위원장 연봉에 관한 적용례) 별표 12 비고 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강원특별자치도 감사위원장의 연봉은 2023년 12월 31일까지 1억918만5천원을 적용한다.